

진 술 서

사건번호 : 2020 형제 56971

진술인(가해자) : 장 민 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종수 검사 귀중

진술서

1. 진술인

| | | | |
|---------------|------------------------------|--------|----|
| 성명 | 장민기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7-6 MS빌 304호 | | |
| 직업 | 회사원 | 사무실주소 | 생략 |
| 전화 | (휴대폰) 010 - 9948 - 5612 | | |
| 대리인에 의한 진술 | 해당 없음 | | |

위 사람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56971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 다음 -

1. 가해자 본인(장민기)은 2020년 4월 29일 12시 20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송종규)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가 하루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예를 갖추어 행동 하였습니다.

5. 가해자 본인은 도로에서 운전 시 사람의 통행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가해자 본인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책임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7. 피해자는 아래 4차례 합의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각 상황마다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웠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 순번 | 날짜 | 피해자 요구 금액 |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사유 |
|----|------------|-----------|---|
| 1차 | 2020.06.13 | 1,200만원 | 보험사에서 부상 보험금 200만원과 피해자에게 사비로 치료비와 기타 비용 100만 원을 지급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총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추가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 하였고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상 준비하기 어려운 금액 이었습니다. |
| 2차 | 2020.06.18 | 600만원 |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600만 원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 3차 | 2020.10.17 | 500만원 | 형사조정단계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은 500만원이었으나, 6월부터 피해자는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추후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을 청구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 예정 금액은 약 200만원이었으며 앞으로 치료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
| 4차 | 2020.10.31 | 300만원 |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개인 비용과 보험금으로 가해자의 치료비를 보전해 드린 부분과, 추후 보험사에서 6월 이후 발생한 치료비 전액에 대해 구상이 청구된다는 점 등을 말씀드리고 150만원~200만원 수준의 |

| | | | |
|--|--|--|---|
| | | |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 드렸으나 300만원 이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8.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지급 또는 보전한 치료비와 기타 비용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날짜 | 내용 | 금액 | 비고 |
|-----|------------|--------------------|-----------|-----------|
| 기타 | 2020.04.29 | 목발 구입 | 15,000 | 가해자 지불 완료 |
| 기타 | 2020.04.29 | 촬영 영상(CT/X-ray) 복사 | 10,000 | 가해자 지불 완료 |
| 기타 | 2020.04.29 | 실내화 및 음료 | 15,750 | 가해자 지불 완료 |
| 기타 | 2020.04.29 | 보호자(피해자 직장 후임) 택시비 | 31,400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5.06 | 삼성화재 부상보험금 | 1,992,530 | 보험사 지급 완료 |
| 치료비 | 2020.05.26 | 도토리한의원(5/7~5/26) | 428,554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5.27 | 도토리한의원(5/27) | 44,108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5.28 | 도토리한의원(5/28) | 36,862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5.30 | 도토리한의원(5/30) | 39,372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6.01 | 도토리한의원(6/1) | 112,112 | 가해자 지불 완료 |
| 기타 | 2020.06.01 | 한우 우족 및 사골 | 200,000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6.02 | 도토리한의원(6/2) | 40,758 | 가해자 지불 완료 |
| 치료비 | 2020.06.04 | 도토리한의원(6/4) | 40,758 | 가해자 지불 완료 |
| 합계 | | | 3,007,204 | |

9.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p>(20.04.29)</p> <p># 1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사고 접수함 - 피해자는 보호자와(같은 회사 부하 직원) 함께 영등포 성애병원으로 이동함 - 가해자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영등포 경찰서) <p># 12: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도착 후 사건 접수함 |
|--|

13:10~

- 가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함

14:00~

- 피해자가 응급실 진료 후 자택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서 후속 치료를 받길 희망함
- 응급실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함
- 그 외 추가 비용(목발 구매, CT촬영 파일 사본)은 가해자의 사비로 결제, 25,000원

15:00~

- 가해자의 자차로 피해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검단탑종합병원으로 이동함(피해자 쪽에 이동 수단이 없는 상황)
- 이동 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전화하여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함

15:40~

- 병원 도착 후 피해자 진료 시작
- 정형외과, 뇌/신경 등 진료 받음
- 뇌/신경 진료 결과 이상 없음 진단 받음
- 정형외과 진료 담당의사와 진료 결과에 대한 면담을 할 때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됨*첨부1)
- 담당의사는 발가락뼈 골절이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며, 3~4주 깁스 후 통원치료 받는 것을 진단/처방 함
- 피해자가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원하였고, 담당의사는 교통사고 입원을 원한다면 다른 1차 병원에 가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병실에 입원하면 실내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실내화와 음료를 구입 후 전달함, 15,750원

17:45~

- 피해자의 보호자가 회사로 복귀해야 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콜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를 결제함, 31,400원

10. 성애병원에서 검단탑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단탑종합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진료 결과를 상담하는 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아래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20.04.29) 검단탑종합병원 담당의사 진료 녹취

피해자 : 왼발 발가락이 좀 아픕니다.

담당의 : 발가락 뼈가 살짝 깨졌습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십니다.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무게때문에 발가락 뼈가 요만큼 깨진거구요, 골절입니다.

피해자 : 두번째, 세번째?

담당의 : 네, 두번째 세번째 골절이시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구요, 그냥 깁스로 지켜보고, 한 3~4주 정도 하거든요 저정도면

피해자 : 3~4주씩이나요?

담당의 : 네, 3~4주 정도 하고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발가락 요정도면 그냥 밟혀도 금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자 : 여기는 괜찮은가요?

담당의 : 여기가 금가셨기 때문에 같이 밑에도 아프실겁니다.

피해자 : 여기가 아프더라구요

담당의 : 어짜피 골절이시기 때문에 밑에랑 위에랑 같이 아프실거구요, 특별하게 수술할 건 아니시니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타박상입니다.

피해자 : 엉덩이 부분이 좀 많이 아픡니다.

담당의 : 엉덩이 어디 쪽이 많이 아프세요?

가해자 :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부딪히신 부분이

담당의 : 아 직접 거기를 받히셨어요? 여기요?

피해자 : 거기말고 여기요, 네

담당의 : 거기는 엉덩이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부딪히셨네요. 아마 근육통, 멍등이로 맞은 것처럼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엑스레이 상으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깁스는 지금 하고 오신 것 말고 통 깁스로 바꿔드릴겁니다. 골절이기 때문에 통깁스가 고정하기에 좋구요. 그리고 약 드리구요. 뭐, 일주일마다 오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경과를 지켜보고..

가해자 : 입원은.. 안하셔도 될까요?

담당의 : 입원이요? 뭐 특별히 입원 하실만한게 없으신데

피해자 : 물리 치료도 좀 받고..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담당의 : ...네.

피해자 : 그럼 물리치료를 오늘 받고 갈까요?

담당의 : 음.. 입원을 할 만한 건덕지는....혹시 만약 입원을 원하신다면 저희 병원 말고 좀 더 작은 병원으로

피해자 :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루 정도 지나고 아플 수 있으니까

담당의 : 그렇죠, 며칠 더 아플 수 있는데 그건 타박상으로 아픈거여서

피해자 : 머리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담당의 :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차 병원들. 그런데 가셔서 입원하시면 되구요. 저희는 수술할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피해자 : 음..그래요...

가해자 : 전무님 많이 안 좋으시면 입원해서 치료를..

피해자 : 일단 하루만 입원해서 경과를 보고... 집 가까운 쪽 온다고 왔거든요.

담당의 : 아 그러세요, 저희 병원은 큰 병원이어서 교통사고로, 이런 정도로는 입원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 : 전화를 하고 왔는데..

담당의 : 그래요, 전화를 하고 오셨어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입원을 하신다고요?

가해자 : 네,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하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의 :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호사에게) 혹시 입원을 얘기 하고 오신건가요?

간호사 : 입원이요?

가해자 : 아까 전화로 문의를 했었어요, 1차 진료 받은 병원에서 입원을 권장하긴 했는데..

간호사 : 저희는 따로... 저한테 연락오신 건 없는데요

담당의 : 한 번 원무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실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하니깐요,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입원해서 통증 조절하는거니깐요, 기브스하고 통증 조절하고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골절이니까 아픈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타박상이니까 그냥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수액맞고 통증 조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밖에 잠깐 계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1.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에서 피해자가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 때문 입니다.

1) 피해자는 검단탑종합병원 퇴원 후 영등포의 도토리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한방치료비 지급액 4년새 3배 증가하여 나이롱환자가 양산되고

보험사기 등 부작용이 우려 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도토리한의원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홍보하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2)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졌고 3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와 본 사건은 무관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3)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본 사건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우려와 걱정을 표했으나, 퇴원 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출장이 있었으나 다른 직원이 대신해서 업무를 잘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4) 피해자에게 가해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말씀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으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2. 가해자 본인은 현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하루 빨리 완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